

『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신축하여
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
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
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함.

3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○ 건 물 (신축)

- 위 치 : 구미시 남통동 200-2번지 일원 (자연환경연수원내)
- 기준가격 : 6,194백만원 (건축공사비 기준)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389.75m² (지하1/지상2)
 - 상설전시실 (기후변화관, 탄소제로관, 제로실천관)
 - 기획전시실, 야외 전시, 세미나실, 다목적 홀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3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4항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남통동 200-2번지 일원(자연환경연수원내)에 위치한 연면적 2,389.75m²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신축 건물을 6,194백만원 (건축공사비 기준)으로 건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▪ 본 변경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